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3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('11.10.10))에 따른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한 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총 정원의 조정 : 583명 (변동없음)

○ 정원변동 세부내역

구분	총계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기 존	583	1	465	2	19	16	80
조 정	583	1	480	2	19	1	80
증/감	-	-	+15	-	-	△15	-

※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정원 책정 : 별정직 △15

나.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

○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: 변동없음

○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

구 분	합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	
기 존	583	1	465	4	24	119	142	111	65	2	19	16	80
조 정	583	1	480	4	24	121	148	118	65	2	19	1	80
증/감	-	-	+15	-	-	+2	+6	+7	-	-	-	△15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 예고 : 2011. 12. 7 ~ 12. 27 (21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의 보건진료직렬의 직급별 정원 적용시기는 최초 일반직 임용시점으로 하되,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기존 별정직보건진료원 중 일반직으로 미전환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583	583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480	480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4	9	2	4	1	8
6급 이하	452	452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
기능직 계	80	80				
기능6급 이하	80	80	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221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이하(시·군·구는 6급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